

[별 표]

재정보증 한도액

(제5조 관련)

1. 5천만원 이상

구 분	직 명	직 위
본 청	재무관	행정지원국장
	특별회계분임징수관	문화관광국장
	특별회계분임징수관	복지환경국장
	특별회계분임징수관	도시관리국장
	특별회계분임징수관	안전건설교통국장
의 회	재무관	의회사무국장
보건소	재무관	보건소장

2. 3천만원 이상

구 분	직 명	직 위
본 청	회계관계공무원 및 보조자	전부서 회계담당자
의 회	회계관계공무원 및 보조자	의회 회계담당자
보건소 및 동	회계관계공무원 및 보조자	보건소 및 동 회계담당자

공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-990호

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인조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인 등록 및 폐기 내역을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.

2015년 11월 6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신조공인 사용 등록 및 사용 개시일 : 2015. 11. 6.
2. 공인등록 및 폐기사유 : 협의체 명칭변경으로 인한 공인 재등록
3. 공인폐기일: 2015. 11. 6.
4. 공인 등록 내역

공인의 종 류	신 조 공 인		
	공 인 명	글씨, 규격, 재료	인 영
청인	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공동위원장인	• 훈민정음체 • 2.4cm × 2.4cm • 흑수우	

5. 폐기 공인 내역

공인의 종 류	폐 기 공 인		
	공 인 명	글씨, 규격, 재료	인 영
청인	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인	• 한글전서체 • 2.4cm × 2.4cm • 흑수우	

공 고

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5-997호

돈의문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촉진구역) 변경결정(안) 공람공고

1. 돈의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촉진구역)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거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.
2.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5년 11월 6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- 가. 공람기간 : 2015년 11월 06일 ~ 2015년 11월 20일(14일간)
 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도시개발과
 다. 공람사유 : 돈의문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변경에 따른 공람
 라. 공람내용 :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

1)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

지 구 명	유 형	위 치	면 적(m ²)			비 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
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	중심지형	종로구 평동 164 일대	199,968.3	증) 70.5	200,038.8	

- 변경사유 :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구역계 변경없이 지번누락정정에 따른 촉진지구의 면적 정정

2) 재정비촉진구역 및 준치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

구 분		구역명	면 적(㎡)			사업방식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총 계			199,968.3	증) 70.5	200,038.8	
돈 의 문	축진구역	돈의문1재정비축진구역	152,130.5	증) 70.5	152,201.0	도시환경 정비사업
		돈의문2재정비축진구역	6,801.4	－	6,801.4	
		돈의문3재정비축진구역	8,844.4	－	8,844.4	
	존치정비구역	돈의문4존치정비구역	12,720.0	－	12,720.0	
돈 의 문	존치관리구역	돈의문5존치관리구역	16,617.0	－	16,617.0	지구단위
		돈의문6존치관리구역	2,855.0	－	2,855.0	계획구역

- 변경사유 : 돈의문1재정비축진구역 구역계 변경없이 지번누락정정에 따른 축진구역의 면적 정정

3) 축진구역별 재정비축진계획 : 돈의문1구역 외 변경없음

가)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144,407.4	증)70.5	144,477.9	100.0	존치면적 (7,723.1㎡) 제외
백지 (획지)	계	99,189.2	증)1,219.3	100,408.5	69.5	
	주박용지	94,385.3	증)1,219.3	95,604.6	66.2	· 지번누락정정의 단순한 토지면적 변경 : 증)60.4㎡ · 광장 면적 감소에 따른 획지1-2 면적 증가 : 증)68.0㎡ · 파출소부지 이전에 따른 획지1-9 신설 : 증)599.5㎡ · 소공원3부지 이전에 따른 획지1-10 신설 : 증)491.4㎡
	종교시설	1,671.2	-	1,671.2	1.1	
	상업업무	3,132.7	-	3,132.7	2.2	
	소계	45,218.2	감)1,148.8	44,069.4	30.5	
정 비 기 반 시 설 등	공원	13,733.7	감)8,165.5	5,568.2	3.9	· 새문안동에 조성계획에 따른 면적 감소 : 감)9,325.5㎡ · 공공공지5 일부 공원 변경 : 증)1,160㎡
	녹지	961.1	증)719.1	1,680.2	1.2	· 새문안동에 조성계획에 따른 녹지3 신설 : 증)522.4㎡ · 공공공지2 폐지 및 녹지 신설 : 증)196.7㎡
	도로	23,813.3	감)222.1	23,591.2	16.3	· 중로3-40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: 감)232.2㎡ · 지번누락정정의 단순한 토지면적 변경: 증)10.1㎡
	공공공지	2,009.3	감)1,356.7	652.6	0.5	· 공공공지2 폐지 : 감)196.7㎡ · 공공공지5 일부 공원 변경 : 감)1,160㎡
	광장	689.2	감)68.0	621.2	0.4	·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
	공공청사	4,011.6	감)1,090.9	2,920.7	2.0	· 주민센터 면적 감소 : 감)367.1㎡ · 파출소 면적 감소 : 감)232.4㎡ · 교통순찰대 면적 감소 : 감)491.4㎡
	문화시설	-	증)9,035.3	9,035.3	6.2	· 새문안동에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시설 신설

나) 용도지역 결정(변경)에 관한 계획

구 분			면 적 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	기 정	증 감	변 경		
합 계			144,407.4	증)70.5	144,477.9	100.0	
주거 지역	소 계		140,593.0	증)70.5	140,663.5	97.4	
	일반 주거	제1종	18,884.1	-	18,884.1	13.1	
		제2종 (7층이하)	4,720.8	-	4,720.8	3.3	
		제2종 (12층이하)	40,840.1	-	40,840.1	28.3	
		제3종	76,148.0	증)70.5	76,218.5	52.7	
상업 지역	일반상업		3,814.4	-	3,814.4	2.6	

■ 변경사유서

- 지번누락정정으로 인한 면적변경이 발생하여 이를 정정함.

다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(변경)

① 도 로

결정 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 용 형 태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
기정	대로	2	3	35-40	주간선도로	4,750 (770)	봉래동2가43	홍은동450	일반도로	
기정	중로	2	43	16	집산도로	199	교남동 55-1	송월동 98-1	일반도로	
기정	중로	3	40	13	집산도로	807	평동 7-35	교북동 35-8	일반도로	
변경	중로	3	40	9 ~ 13	집산도로	815	평동 9-1	교북동 35-8	일반도로	선형변경 폭원축소 노선연장
기정	중로	3	100	13	집산도로	148	교북동 10-38	행촌동 37-26	일반도로	
기정	중로	3	101	13	집산도로	350 (205)	평동 209-1	송월동 68-4	일반도로	
기정	소로	1	101	11	국지도로	224	평동 13-30	평동 36	일반도로	
기정	소로	2	102	8	국지도로	314	송월동 2-2	행촌동 1-66	일반도로	
기정	소로	3	103	4	국지도로	64	교북동 35-7	교북동 10-9	일반도로	

주) ()안은 구역내 연장임.

■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3-40	중로3-40	• 변경 - 선형변경 - 폭원 : B=13m → 9~13m - 연장 : L=807m → 815m	• 중로3-40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폭원 축소 및 노선 연장

② 공원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 정	①	공원	어린이공원	송월동 2-3 일원	3,202.9	-	3,202.9	
폐 지	②	공원	근린공원	신문로2가 37 일원	10,039.4	감)10,039.4	-	
폐 지	③	공원	소공원	교북동 10-38 일원	491.4	감)491.4	-	
신 설	④	공원	소공원	행촌동 180-31 일원	-	증)491.4	491.4	
신 설	⑤	공원	소공원	송월동 94-1 일원	-	증)1,160	1,160	
신 설	⑥	공원	소공원	신문로2가 54 일원	-	증)713.9	713.9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②	공원	• 폐지 - 면적 : 10,039.4㎡	• 새문안동네 조성계획에 따른 근린공원 폐지
③	공원	• 폐지 - 면적 : 491.4㎡	• 공공청사 인접 배치 계획에 따른 소공원 폐지
④	공원	• 신설 - 면적 : 491.4㎡	• 공공청사 인접 배치 계획에 따른 소공원 설치
⑤	공원	• 신설 - 면적 : 1,160㎡	•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소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녹음을 제공
⑥	공원	• 신설 - 면적 : 713.9㎡	• 새문안동네 조성계획에 따른 소공원 설치

③ 녹지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기정	①	녹지	완충녹지	평동 108 일원	961.1	-	961.1	
신설	②	녹지	완충녹지	평동 16-1 일원	-	증)196.7	196.7	
신설	③	녹지	완충녹지	신문로2가 1-402 일원	-	증)522.4	522.4	

■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②	녹지	• 신설 - 면적 : 196.7㎡	•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완충녹지 설치
③	녹지	• 신설 - 면적 : 522.4㎡	• 새문안동네 조성계획에 따른 완충녹지 설치

④ 광장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①	광장	일반광장	교남동 58-5 일원	689.2	감)68.0	621.2	

⑤ 공공공지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폐지	②	공공공지	공공공지	평동 16-1 일원	196.7	감)196.7	-	
변경	⑤	공공공지	공공공지	송월동 32-43 일원	1,812.6	감)1,160	652.6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②	공공공지	• 폐지 - 면적 : 196.7㎡	• 완충녹지 설치로 인한 공공공지 폐지
⑤	공공공지	• 변경 - 면적 : 1,812.6㎡ → 652.6㎡ (감:1,160㎡)	• 소공원 설치로 인한 공공공지 면적 축소

⑥ 공공청사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변경	①	공공청사	주민센터	행촌동 180-10 일원	915.6	감)367.1	548.5	
폐지	②	공공청사	파출소	송월동 116 일원	599.5	감)599.5	-	
변경	③	공공청사	교통순찰대	행촌동 158-8 일원	2,496.5	감)491.4	2,005.1	
신설	④	공공청사	파출소	행촌동 180-17 일원	-	증)367.1	367.1	

■ 변경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①	공공청사	• 변경 - 면적 : 915.6㎡ → 548.5㎡ (감:367.1㎡)	•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축소
②	공공청사	• 폐지 - 면적 : 599.5㎡	• 관할 치안구역을 고려해 주민센터 인근에 배치
③	공공청사	• 변경 - 면적 : 2,496.5㎡ → 2,005.1㎡ (감:491.4㎡)	• 소공원 신설 및 교통순찰대 설치계획에 따른 면적 축소
④	공공청사	• 신설 - 면적 : 367.1㎡	• 관할 치안구역을 고려해 주민센터 인근에 배치

⑦ 문화시설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명 칭	세분류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①	문화시설	-	신문로2가 6 일원	-	증)9,035.3	9,035.3	

■ 결정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결정내용	결정사유
①	문화시설	• 신설 - 면적 : 9,035.3㎡	• 새문안동네 조성계획에 따른 문화시설 신설

라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(변경없음)

시설의 종류	면 적	비 고
관리사무소	612㎡	
휴게시설	7개소	
어린이놀이터	2,979㎡	
근린생활시설	9,631㎡	
주민운동시설	1,466㎡	
경로당	705㎡	
주민공동시설	5,226㎡	
보육시설	796㎡	
문고	816㎡	

※ 상기 면적은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

마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①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	가 구 및 획 지		정비개량계획(동)			
	명 칭	위 치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계	존치	철거후 신축	철거후 이주
기정	돈의문1 구역	종로구 교남동 62-1번지 일원	152,130.5	-	-	880	5	871	4
변경			152,201.0	-	-	880	57	816	7

②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획지 구분	위치	면적(㎡)	건폐율 (%)	용적률(%)		층수 (지상/ 지하)	높이 (m)	주용도	비고
					기준	상한				
기정	1-1	행촌동 27-1	12,766.10	50이하	-	250이하	23/3이하	70이하	주거	
기정	1-2	홍파동 42-1	54,347.70	50이하	-	253이하	23/4이하	70이하	주거 /판매	지변누락 의 정정 및 광장 면적감소
변경			54,476.10	50이하	-	253이하	23/4이하			
기정	1-3	평동 13-1	26,281.40	50이하	-	250이하	23/5이하	70이하	주거 /판매	
기정	1-4	교북동 11-2	4,122.80	-	-	-	-	-	주거 /판매 /업무	
			990.10	50이하	-	250이하	23/5이하	70이하	주거	주거
			3,132.70	60이하	-	583이하	25/5이하	73이하	주거 /판매 /업무	상업
기정	1-5	행촌동 37-26	968.80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-	종교시설	
기정	1-6	홍파동 5-18	702.40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-	종교시설	
기정	1-7	행촌동 158-8	2,496.5	50이하	-	250이하	8이하	30이하	공공 청사 (교통 순찰대)	
변경			2,005.1							
기정	1-8	행촌동 180-10	915.60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20이하	공공 청사 (주민 자치센터)	
변경			548.5							
기정	1-9	송월동 116	599.50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20이하	공공 청사 (파출소)	
변경			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	주거 /판매 /근린생활 시설	
신설	1-10	교북동 10-38	491.4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20이하	주거 /판매 /업무 /근린생활 시설	
신설	1-11	행촌동 180-17	367.1	50이하	-	250이하	5이하	20이하	공공 청사 (파출소)	
신설	1-12	신문로2가 6	9,035.3	60이하	-	150이하	4이하	-	문화시설	

주) 획지 1-3의 부속용도의 경우 한양도성에 인접한 북측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은 카페테리아 및 스낵바 등 젊은이들의 이용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함

구 분	기 정		변 경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(변경없음)	○ 건설규모 : 세대당 전용면적 165㎡이하 ○ 건설비용 - 세대당 전용면적 85㎡이하 90.5% - 세대당 전용면적 85㎡이상 9.5%					
	구 분	전용 면적	세 대 수		비 율	비 고
			소 계			
	계	—	2,415	2,415		100%
	전용 면적 85㎡ 미만	33㎡	16	2,185		0,6%
		37㎡	91			3,8%
		38㎡	232			9,6%
		42㎡	136			5,6%
		44㎡	68			2,8%
		45㎡	75			3,1%
		59㎡	400			16,6%
		77㎡	71			2,9%
		84㎡	1,096			45,4%
	전용 면적 85㎡ 이상	101㎡	130	230		5,4%
		116㎡	79			3,3%
		138㎡	21			0,9%
건축한계선	○ 지구내 대부분 가로변 : 3m ○ 중로3-101호선 상업지역 동측, 중로3-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: 6m ○ 중로3-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: 8m ○ 중로2-43호선 북측 도로변 : 10m ○ 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: 10m ※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		○ 지구내 대부분 가로변 : 3m ○ 중로3-101호선 상업지역 동측, 중로3-40호선 임대주택부지 남측도로변 일부: 6m ○ 중로3-40호선 임대주택부지 북측도로변 일부 : 8m ○ 중로2-43호선 북측 도로변 : 10m ○ 사직로변 임대주택부지 : 10m ○ 사직로변 1-10획지 : 3m(신설) ○ 새문안로 문화시설용지 : 3m(신설) ※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			
	벽면한계선 (변경없음)	○ 의주로에서 인왕산녹지축 연결 보행자도로 : 15m ○ 생활가로변 : 17m ○ 생활가로변 1층벽면한계선 : 5m ※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				

바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사) 공공용지 부담계획

구분			존치 면적 (㎡)	현 황(㎡)			사업구역 계획(㎡)					
명칭	면적 (㎡)			계	대지	공공용지	계	사업시행면 적(㎡)	공공공지 부담계획(㎡)			공공용지 부담율 (%)
									소계	기존	부담	
기 정	돈의 문 1	144,407.4	548.5	143,858.9	111,798.5	32,060.4	143,858.9	102,652.3	41,206.6	32,060.4	9,146.2	8.18
변 경		144,477.9	548.5	143,929.4	111,869.0	32,060.4	143,929.4	103,433.3	40,496.1	32,060.4	8,435.7	7.54

- 마.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사항은 「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돈의문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」 결정도서에 명시
- 바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돈의문 재정비촉진계획(돈의문1구역) 변경결정(안) 참조 : 생략(비치한 도서와 같음)
- 사.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종로구청 도시개발과(☎ 02-2148-2692)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